



대 법 원  
제 1 부  
판 결

2012. 8. 30. 원본영수	인
2012. . . 판결송달	

정본입니다.

2012. 8. 31.

법원사무관 김 정



사 건 2012두12358 재심청구의 소  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
소송수행자 길기수, 박명순, 서언준

피고(재심피고)보조참가인

주식회사 케이티

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
대표이사 이석채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3. 선고 2011재누22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

## 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2. 8. 30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김창석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양창수 \_\_\_\_\_

주    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박병대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고영한 \_\_\_\_\_

